**내가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 주계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CI: Critical Illness(중대한 질병)의 약자로 제3조(‘중대한 질병’, ‘5대SI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또는 제4조(‘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재해: 별표 8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마.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준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기본보험료: 보험기간 중 기준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준보험료 총액(이하 ‘기준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에 도달할 때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는 기준보험료 및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기본보험료로 봅니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CI보험금’ 지급사유(이하 ‘CI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 발생 전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라. 보험료 납입한도

(1)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준보험료 총액의 2배로 하며, 연간납입한도는 기준보험료×12×200%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중도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바. 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이하,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합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이라 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납입중 유지관련비용’과 ‘납입후 유지관련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사.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납입면제 포함)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 월대체보험료(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기타비용 제외) 합계액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해당월 기준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준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기준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에 해당월까지의 경과월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3)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6. 적립금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계약자적립금

(1)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예정적립이율(연복리 2.5%, 이하 ‘예정적립이율’이라 합니다)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예정적립금(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예정적립이율로 일자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 보험료적립금

(1)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2)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예정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라. 기본보험금액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및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체결시점부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까지

(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사망보험금과 사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사망보험금과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다)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사망보험금과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2) 최초의 보험금으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가)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에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금액’의 1.25배를 차감하고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1.25배를 더한 금액」과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25배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에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금액’의 1.25배를 차감하고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1.25배를 더한 금액」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25배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다)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 ‘(2)’의 ‘(가)’ 내지 ‘(나)’의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1)’의 ‘(다)’의 기본보험금액

※ ‘(2)’의 ‘(다)’의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2)’의 ‘(가)’의 기본보험금액

(3) 최초의 보험금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 ‘(3)’의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1)’의 ‘(나)’의 기본보험금액

|  |
| --- |
| **【최초의 보험금으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본보험금액 계산시 1.25배의 의미】**  최초의 보험금으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향후 남아 있는 총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및 CI보험금)은 기본보험금액의 80% 해당액입니다. 이때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 또는 추가납입시 향후 남아 있는 총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향후 남아 있는 총 보장금액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본보험금액의 80% 해당액  = max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금액’의 1.25배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1.25배), 계약자적립금의 1.25배의 105%] × 80%  = max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의 80% 해당액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금액’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105%] |

마. 기준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최저해지환급금(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지급하는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서, 예정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 최저보장보험금(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으로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자.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중대한 질병’, ‘5대SI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및 ‘중대한 암 이외의 중대한 질병’으로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 |
| 중대한 질병 |
|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5대SI질병’이라 함은 ‘5대중기이상질병’ 중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5대중기이상질병’이라 함은 ‘5대중기이상질병’의 정의(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5대중기이상질병 |
|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

⑤ 제4항의 ‘5대중기이상질병’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은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의하여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중대한 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중대한 수술’의 정의(별표 7 참조)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최초 사유발생에 한하여 1회한) : CI보험금 지급**

**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나. ‘중대한 암 이외의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대SI질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

|  |
| --- |
| **【 보험금 지급 예시, 기본보험금액 1억원 기준 】**  예1) 피보험자가 최초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5대질병SI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8,000만원 지급  예2) 피보험자가 5대SI질병으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CI보험금(1년 미만 유방암 발생 제외) 지급사유 발생시  CI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2,000만원 지급  예3) 피보험자가 5대SI질병으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보험계약일 이후 1년 미만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CI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6,000만원 지급  예4) 피보험자가 다른 지급사유 발생 없이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1년 미만 유방암 발생 제외)  CI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2,000만원 지급  예5) 피보험자가 다른 지급사유 발생 없이 보험계약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CI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6,000만원 지급  예6) 사망시(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 |

**제 6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의 40%(다만,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③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
|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인한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 사유(질병 및 재해)로 봅니다. 특히 ‘연명의료’의 시행 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로 합니다.**

**⑧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6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⑨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⑪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⑫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⑬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⑭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⑮ 제1항, 제14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의 납입지연,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미납입 및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른 인출 등으로 인하여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제8항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CI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후에 ‘5대SI질병’으로 진단 확정되더라도 5대질병SI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8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
| --- |
|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 해주기 위해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3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14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
| --- |
|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2조(주소변경통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
| --- |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1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로 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8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 19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
| --- |
|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
| --- |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로 합니다.**

**제 21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
|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2.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 22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
| **【설명】**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은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사망보험금,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기준사망보험금’=

감액신청 직전의 ‘기준사망보험금’ × (감액신청 직후 보험가입금액 / 감액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5대질병SI보험금 또는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기본보험금액’ =

감액신청 직전의 ‘기본보험금액’ × (감액신청 직후 보험가입금액 / 감액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3 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
| --- |
| **【매년 계약 해당일 】**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

③ 청약서류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
| --- |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제 24 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 --- |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중대한 질병’, ‘5대SI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마’목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 26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의 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준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아’목 ‘(2)’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 --- |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기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아’목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의 개념 및 월대체보험료 공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및 예정적립금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

2.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다는 사실

3.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대체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4.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로 충당 가능한 개월수

③ 기준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입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기준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월대체보험료로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기준보험료 총액계산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에서 차감하며, 중도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 기준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⑤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⑦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 해당하는 당월분 포함 12개월분 이하의 기준보험료에 한하며, 기준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제7항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계산한 이자는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다’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⑨ 특약보험료의 경우 제7항에 따른 기준보험료의 배수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7항에 따른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경우 특약보험료는 각 특약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제7항의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⑪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⑫ 보험료 할인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 월대체보험료의 공제**

월대체보험료는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월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아’목 ‘(1)’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공제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아’목 ‘(2)’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공제

|  |
| --- |
|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계약일 : 7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20일       ⇒ 2년 이내 매월 20일, 2년 이후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2) 계약일 : 7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10일       ⇒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

**제 28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준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아’목 ‘(2)’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기준보험료 총액’ 납입 이후 중도인출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준보험료와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 합계액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 실효된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연체된 기준보험료와 특약보험료(특약 부활(효력회복)시)의 합계액 이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  |
| --- |
|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하며, 기본보험금액은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5항에 의한 특약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기간 동안의 특약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30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3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2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 --- |
| **【예시】**  예를 들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33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34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한달간 적용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
| --- |
| **【공시이율】**  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등 시중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복리 0.75%)로 적립됩니다. |

**제 35 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복리 0.75% 최저보증)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
| --- |
| **【5대질병SI보험금 또는 CI보험금 지급 후의 해지환급금】**  5대질병SI보험금 또는 CI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5대질병SI보험금 또는 CI보험금 지급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제 36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 --- |
|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7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7월 15일부터 다음연도 7월 14일까지 1년 |

②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금액과 이자가 차감되므로 최초 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험료적립금(계약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 중 큰 금액)이 1구좌당 2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1구좌는 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말합니다.)

④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  |
| --- |
|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1구좌)】**  예1) 주계약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주계약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3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300만원의 50%는 150만원이나, 월납계약은 계약자적립금이 2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1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다만, 인출금액에서 중도인출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

**제 37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9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
| --- |
| **【소멸시효】**  예를 들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수익자가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제 42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43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4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5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6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7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 | ---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기본보험금액의 100% |
| 5대질병SI보험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하였으나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기본보험금액의 80% |
|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본보험금액의 2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60%) |
| 5대질병  SI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대SI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 기본보험금액의 20% |
| CI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중대한 암’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기본보험금액의 8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40%) |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본보험금액의 6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20%) |

주) 1.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4.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을 말합니다.

6.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7.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6(‘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8.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9. ‘5대중기이상질병’이라 함은 별표 5(‘5대중기이상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5대중기이상질병’으로,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을 말합니다.

10. ‘5대SI질병’이라 함은 ‘5대중기이상질병’ 중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11.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와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CI보험금만을 지급하며,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후에 ‘5대SI질병’으로 진단 확정되더라도 5대질병SI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사망보험금,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13.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및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체결시점부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까지

(1)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사망보험금과 사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2)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사망보험금과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3)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사망보험금과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나. 최초의 보험금으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1)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에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금액’의 1.25배를 차감하고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1.25배를 더한 금액」과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25배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2)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에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금액’의 1.25배를 차감하고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1.25배를 더한 금액」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계약자적립금의 1.25배의 105% 금액」 중 큰 금액

(3)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 ‘나’호 ‘(1)’ 내지 ‘(2)’의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가’호 ‘(3)’의 기본보험금액

※ ‘나’호 ‘(3)’의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나’호 ‘(1)’의 기본보험금액

다. 최초의 보험금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 ‘다’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가’호 ‘(2)’의 기본보험금액

|  |
| --- |
| **【최초의 보험금으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본보험금액 계산시 1.25배의 의미】**  최초의 보험금으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향후 남아 있는 총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및 CI보험금)은 기본보험금액의 80% 해당액입니다. 이때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 또는 추가납입시 향후 남아 있는 총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향후 남아 있는 총 보장금액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본보험금액의 80% 해당액  = max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금액’의 1.25배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1.25배), 계약자적립금의 1.25배의 105%] × 80%  = max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의 80% 해당액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중도인출금액’ +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105%] |

14.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15. 5대질병SI보험금 또는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기본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기본보험금액=

감액신청 직전의 기본보험금액 × (감액신청 직후 보험가입금액 / 감액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16. 최저보장보험금이라 함은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사망시)까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 5대질병SI보험금 및 CI보험금을 말합니다.

17.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8.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대질병SI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서 5대질병S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후의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5대질병SI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9.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CI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서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후의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CI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0. 이 보험(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의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21. 이 보험(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35조 제3항 관련)**

| **구 분** | | **기 간** | **지급이자** |
| --- | --- | --- | --- |
| 사망보험금,  CI보험금  5대질병SI보험금  (제5조)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35조  제1항) |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41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  |
| --- | ---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  |
| --- | ---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80  45  25  15  5  1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  |
| --- | --- | --- |
| **항목** | **내 용** | **점수** |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 치료  병력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6  4  2  0 |
| 기능  장해  소견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0  12  8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  |
| --- | ---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 ---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80  60  40  20  10  5  2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  |  |
| --- | ---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40  30  10  50  30  15  20  15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  |
| --- | ---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 --- |
| **D:\★권민성\1. 개정\18.04\★★장해분류표\삽화\컬러 최종\그림-01-1.jpg** |
| **< 가슴뼈 >** |
| **D:\★권민성\1. 개정\18.04\★★장해분류표\삽화\컬러 최종\그림-05-1.jpg** |
| **< 골반뼈 >**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 --- |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 ---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 --- |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5  15  10  3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
| --- |
| **D:\★권민성\1. 개정\18.04\★★장해분류표\삽화\컬러 최종\그림-02-1.jpgD:\★권민성\1. 개정\18.04\★★장해분류표\삽화\컬러 최종\그림-08-1.jpg** |
| **< 손가락 >**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 ---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40  30  10  5  20  8  3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
| --- |
| **D:\★권민성\1. 개정\18.04\★★장해분류표\삽화\컬러 최종\그림-06-1.jpgD:\★권민성\1. 개정\18.04\★★장해분류표\삽화\컬러 최종\그림-04-1.jpgD:\★권민성\1. 개정\18.04\★★장해분류표\삽화\컬러 최종\그림-07-1.jpg** |
| **< 발가락 >**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 --- |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30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 ---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  |
| --- | --- |
| **유 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 **배변·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 **옷 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 별표 4 】 ‘중대한 질병’ 의 정의**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 사.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가. 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나. 초기전립선암(본 상품의 ‘초기 전립선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 이하 또는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다.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또는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

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으로 인한 악성종양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마. 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바.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사. 대장점막내암 (‘대장점막내암’이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암(carcinoma in-situ), 경계성종양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②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
| --- |
| **【'일반 암'과 '중대한 암'의 차이점】**  일반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악성 신생물 분류표”를 근거로 특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암은 “악성 신생물 분류표”를 별도 사용하지 않고 약관 내용과 같이 중대한 암으로 “정의”된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다만, 중대한 암에서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악성종양이라 하여도 약관상 기술된 “제외 악성종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Ⅱ.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및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다)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치하는 ‘중대한 뇌졸중’ 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외상에 의한 경우

2.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3.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4.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으로 인한 경우

|  |
| --- |
| **【'뇌졸중'과 '중대한 뇌졸중'의 차이점】**  뇌졸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졸중 분류표”에 특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고 약관 내용과 같이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 의거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 및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일정부분의 장해상태)이 동반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분류표”에는 해당되지만 중대한 뇌졸중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제외 뇌졸중”이 존재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Ⅲ.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의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2.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혈액 중 심근효소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또한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Myocardial Microinfa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
| --- |
| **【'급성심근경색증'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차이점】**  급성심근경색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를 근거로 특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고 약관과 같이 “정의 등 진단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징 및 진단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Ⅳ.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만성적으로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제외합니다.

**Ⅴ.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①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영구적인 황달(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② ‘말기간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Ⅵ. 말기 만성폐질환(End Stage Chronic Lung Disease)**

① ‘말기 만성폐질환’이라 함은 [만성폐질환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에서 양쪽 폐장 모두가 심한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여서 그 결과 도보 동작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제한되고 평생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서 다음의 한 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30% 이하

2. 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상 동맥혈 산소분압(PaO2)이 60㎜Hg 이하

**[만성폐질환 대상질병 분류표 ]**

만성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 --- |
|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2.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3.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4. 폐기종  5.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6. 기관지확장증  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8. 성인호흡곤란증후군  9. 폐부종  10. 기타 간질성 폐질환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 J40  J41  J42  J43  J44  J47  J60 ~ J70  J80  J81  J84  J96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단,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③ ‘말기 만성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 흉부X선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Ⅶ.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① ‘루게릭병’이라 함은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심한 근력 약화 및 근육 위축을 일으키는 퇴행성 운동신경원질환을 말합니다.

②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라 함은 ‘상위운동원 징후 및 하위운동원 징후가 3부위 이상에서 모두 존재하는 상태’ 또는 ‘상위운동원 징후 및 하위운동원 징후가 1부위 이상에서 존재하면서 유전자 검사 상 양성 소견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③ 제①항의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은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세계신경학협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El Escorial 개정 진단기준(1998년)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Ⅷ.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①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골수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 골수조혈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한 가지 항목 이상의 치료를 받아왔거나, 골수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제②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인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의 판단기준은 골수조직검사상 골수저세포성이고, 말초혈액 검사상 다음 세가지 항목 중 두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단, 골수조직검사와 말초혈액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결과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③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 확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및 골수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
| --- |
| 제1항에서 '일시적인 경우'라 함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치 저하가 고착화 되지 않은 상태로 일시적 현상에 의하여 저하되었다가 정상수치로 복원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별표 5 】 ‘5대중기이상질병’의 정의**

**Ⅰ. 뇌출혈 및 뇌경색증**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 --- | ---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4. 뇌경색증 | I60  I61  I62  I63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의하여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Ⅱ. 급성심근경색증**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 --- | ---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1. 급성 심근경색증  2. 후속심근경색증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1  I22  I23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Ⅲ.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①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이라 함은 사구체 여과율이 30ml/min/1.73m2 미만이면서 이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진단 확정은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의 크기 및 요로 폐쇄 징후 등을 확인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집니다.

**Ⅳ.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①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간경변증으로 진단받고, 복수(ascites)가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간경변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 --- |
| 1.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2. 알코올성 간경변증  3. 간의 섬유증 및 경화증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5. 간의 만성 수동울혈(심장성 간경화증) | K70.2  K70.3  K71.7  K74  K76.1 |

③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과 복수의 확인은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에 의해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Ⅴ.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①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이라 함은 [만성폐질환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에서 폐장이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여서 그 결과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로서 다음의 한 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40% 이하

2. 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상 동맥혈 산소분압(PaO2)이 65㎜Hg 이하

**[ 만성폐질환 대상질병 분류표 ]**

만성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 --- |
|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2.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3.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4. 폐기종  5.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6. 기관지확장증  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8. 성인호흡곤란증후군  9. 폐부종  10. 기타 간질성 폐질환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 J40  J41  J42  J43  J44  J47  J60 ~ J70  J80  J81  J84  J96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다만,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③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 흉부X선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표 6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
| --- |
| **【‘9의 법칙’ 】**  ‘9의 법칙’이란 총 체표면적 중 화상을 입은 면적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체 각 부위의 체표면적 비율을 정하여 두고 화상 발생시 각 부위의 비율을 합산하여 화상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
| --- |
|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는 연령에 따른 체표면적의 비율 변화를 고려하여 총 체표면적에 대한 각 신체부위의 비율을 세분화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정확한 화상비율을 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 별표 7 】 ‘중대한 수술’ 의 정의**

**Ⅰ.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Ⅱ.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Aorta Graft Surgery)**

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② 단, 하기와 같이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들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경피적혈관내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Ⅲ. 심장판막수술(Heart Valve Surgery)**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2.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② 그러나, 하기와 같은 수술들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예)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1.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Ⅳ. 5대장기이식수술(5 Major Organ Transplantation)**

①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②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별표 8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